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8
----------	-----

제출년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자원봉사 활동범위의 확대,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과 센터장의 선임, 그리고 도 센터와 시·군·구센터 사업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 2. 5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활동범위 확대 (안 제4조)

-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범위에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함.

나.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 (안 제6조의2)

-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함.

다. 특별·광역시·도 센터사업과 시·군·구 센터사업을 구분하여 규정(안 제7조)

- 특별시·광역시·도센터의 사업으로 자원봉사 관리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등 자원봉사 지원업무를 주로 규정하였으며,
- 시·군·구 센터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를 규정하여 그 기능을 각각 구분함.

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의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운영을 민간주도로 하도록 함.

마.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 (안 제13조)

-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 교류 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함.

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 (안 제16조)

-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별첨)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행자부 시·도(시·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표준안
- 입법예고(2006.6.29~2006.7.18)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 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 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⑧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 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경력인정 등) 시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2005.8.4 법률 766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①제14조·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8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④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07669호, 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6.2.6 대통령령 제1931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및 청소년위원회위원장

2. 민간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되 행정자치부장관, 민간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자원봉사진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실무위원 :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경찰청·소방방재청 및 청소년위원회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민간실무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 중 민간실무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민간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관련 국장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⑦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3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자원봉사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교육훈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

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한국자원봉사협회의 회원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②협회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③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및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9318호, 2006.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에 임명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 중인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는 이 영에 의한 조례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사도(사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 표준안

1. 개정이유

2006. 2. 5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0. 1. 5 시행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표준안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3조)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

나.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의 2)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함

다. 특별시광역시사도 센터 사업과 사군구 센터 사업을 구분하여 규정(안 제7조)

특별시·광역시·도센터의 사업으로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등 자원봉사 지원업무를 주로 규정하였으며 시군구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를 주로 규정하여 그 기능을 각 각 구분함

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주도로 하도록 함

마.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13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 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6)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함

사도(사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 표준안

사도(사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표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를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로하고, 제2호 및 제3호 중 “제1호에 규정된”을 삭제하고, 제3호 중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를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로하고,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하며,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로 구분한다

<시·도 조례>

제7조(센터의 사업) 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시·군·구 조례>

제7조(센터의 사업)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로 구분한다

<시·도 조례>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 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 ⑦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군·구 조례>

-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군·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 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⑧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 “직장의 장”을 “직장”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포상)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로 구분한다

<시·도 조례>

제16조(보험가입) 제1항 “보험”을 “보험 또는 공제”로 하며,
제2항 “보험료”를 “보험 또는 공제료”로 한다.

<시·군·구 조례>

제16(보험가입) ① 시·군·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군·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군·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시·군·구)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 ----- -----.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 신설 >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 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다.

4. < 삭제 >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0. <u>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u>	13. <u>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u>
11. <u>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u>	14. <u>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u>
	15. <u>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u>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u>시·도 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자원 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u>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u>현행과 같 음</u>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u>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 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 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② <u>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u> 2. <u>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u> 3. <u>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u> 4. <u>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u>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u>현행과 같음</u>

심의·의결

③위원회는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신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시·군·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제6조의2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은 시·군·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군·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2.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운영 등) 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④ 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당해 행정구역
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
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
기 위하여 매 회계 년도의 사업계
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년
도 개시 1월 전까지 시·도 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등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 년도의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
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
아 다음 회계 년도 2월말까지 시·
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
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년도 경과 후 5
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군·구청장은 자
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현행과 같음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지원)①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 등은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 등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군·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신설>	제12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주간) ①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시·군·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

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포상)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 등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	<삭제> 제14조(포상) 시·군·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 등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①시·군·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군·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 신설 >	

	3. <u>시·군·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u>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
제17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실비 지급)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①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현행과 같음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2001.10.17 조례 제1837호]

제0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반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수탁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시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관광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시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02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4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이와 관련된 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5. 기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의원, 유관기관·관련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원, 유관기관·관련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민간협력담당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속초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3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등

제13조(설치) ①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상담·교육에 관한 사업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자원봉사의 양적 확대와 질적개선 및 자원봉사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4조(운영) 센터운영은 시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개인에게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조직 및 구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 등록) 센터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등을 고찰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취소) 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을 기회로 하여 특정 정당지지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등록한 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판명된 때

3.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처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4. 기타 자원봉사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19조(교육훈련) ①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증서 교부) 센터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04장 위탁운영

제21조(위탁운영) ①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22조(협약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4. 센터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수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 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제21조의 수탁자에게 사업운영 등에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절차·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수입·지출 등 회계·결산처리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겸직금지) 센터에서 자원봉사업무를 처리하는 유급 사무원은 다른 기관·단체의 유급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운영 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과 장부, 기타서류를 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05장 자원봉사활동 진흥

제27조(실비지급) ①시·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 또는 센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보험가입) ①시장은 센터의 자원봉사활동중 자원봉사자가 입을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받는 자원봉사수요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자원봉사활동의 상호교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자원봉사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